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19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서영교·김원이·박희승
양부남·박지원·이성운
복기왕·김기표·전진숙
이해식·이주희·모경중
최혁진·김태선·박홍배
임미애·오세희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이 심화되고 초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저출산을 완화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와 같은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상생·미래대응까지 확대하고, 전반적인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함.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미래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인구미래위원회에 정책의 심의 뿐 아니라 조정 권한과 인구관련 예산 사전협의 및 의견제출권

을 부여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 부처에 산개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대통령이 의장인 인구미래위원회 특별회의를 두어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한 대통령의 실질적 역할 보장으로 오늘의 인구위기가 내일의 성장기회로 만들고자 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구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중·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

경제적 변화를 전망하여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로 국민 개인의 삶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출생 및 돌봄 지원

제7조(인구정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경제인구 확대, 외국인 정책,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완화 및 지역간 격차 해소 등 전반적인 인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구 추계, 지역간 인구 격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돌봄체계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를 위한 통합적 돌봄체계의 구축과 원활한 시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관리 및 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전반의 성·재생산 건강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차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인구변화 대응

제11조(인구구조 변화 대응 제도 정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돌봄인력 등 각 분야의 인력 수요 파악 및 부족 인력 양성, 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인프라 개편, 병력자원 감축 대비 체계 마련 등 사회 전반적 제도정비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 및 일자리 정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참여인구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전망에 맞추어 직종별, 직능수준별 외국인력의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및 주거환경 개선, 사회통합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중장년 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

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로봇 등 은퇴세대 수요에 맞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구개발·제품 표준 제공·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절 지역상생·미래대응

제20조(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회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과학기술혁신 등 미래대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혁신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방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등 과학기술혁신이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3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정부는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에 따른 인구미래위원회(이하 “인구미래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미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인구미래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인구미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구관련 예산 사전협의 및 의견제출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관련 예산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구미래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검토, 여타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등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은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관련 예산사업을 분류하고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구미래위원회는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구구조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인구미래위원회) ①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구미래위원회를 둔다.

② 인구미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인구 확대, 외국인력 활용 등 노동시장 전략,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지역상생 전략 및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정보취약계층의 기술변화 적응 지원 등 미래대응 전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인구미래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3.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⑤ 인구미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인구미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인구미래위원회에 정책운영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인구미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구미래위원회 특별회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시행과 관련 현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인구미래위원회 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③ 특별회의의 위원은 인구미래위원회 위원 중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별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인구미래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인구미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미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인구미래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처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고, 사무처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인구미래위원회는 인구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시·도 인구미래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구미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 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7조(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9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인구미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일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정책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정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정책기본법」 제24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구미래위원회”로 한다.

③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정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

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정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으로 한다.

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는 「인구정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인구미래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